

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1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9. .
제출자 : 충주시장

1. 제안이유

- 읍면 위임사무인 상수도 검침업무를 상수도과로 이관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 제고

2. 주요내용

- 읍면 위임사무 삭제, 상수도과로 이관
 - 상수도 검침업무
 - 상수도 사용료로 인한 정수처분

3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4. 기타참고자료 : 관계법령 별첨

- 덧붙임 :
1.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 2. 신구조문 대비표
 3. 관계법령

충주시 조례 제 호

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제45호 및 제4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연번	위 임 사 무 명	권한위임		관 계 법 령
		읍면장	동장	
45	◦ 상수도 업무관련 민원처리	○		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53조
46	◦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위반자에 대한 정수처분(단,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 중 수도요금으로 인한 정수처분 및 같은 조 제3항의 통보는 제외)	○		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			
[별표]				[별표]						
연 번	위 임 사 무 명	권한위임		관 계 법령		연 번	위 임 사 무 명	권한위임		관 계 법령
		읍면 장	동장					읍면 장	동장	
45.	상수도 업무관련 민원처리 및 겹침	<input type="radio"/>		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53조		45.	상수도 업무관련 민원처리	<input type="radio"/>		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53조
46.	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위반자에 대한 정수처분	<input type="radio"/>		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		46.	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위반자에 대한 정수처분(단,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의 수도사용료로 인한 정수처분 및 같은 조 제3항의 통보는 제외)	<input type="radio"/>		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 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사무관리규정

제16조(결재) ① 문서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·보좌기관 또는 당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, 그 위임전결사항은 당해 기관의 장이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1996.5.3, 2002.12.26>

③ 결재권자가 휴가·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되며,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8.7>